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5월 03일 20시 51분



목차

목차	2
민원사무편람 및 서식 - 문화예술과	3
비디오물 제작(배급)업 변경신고	3

비디오물 제작(배급)업 변경신고

2023.04.12 10:07 조회수 250 등록자 임수민

- 민원사무명 비디오물 제작(배급)업 변경신고
- 민원내용 비디오물 제작, 배급업 변경신고
- 관계법령 『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』제61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
- 구비서류 ○ 신청서
○ 신고증
○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○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
○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인 경우)
- 처리부서 문화예술과
- 협의부서
- 접수 민원지적과
- 수수료 조례
- 처리기간 3일
- 기타사항
- 흐름도 ① 민원인신청 → ② 종합민원실 서류접수 → ③ 문화예술과로 민원서류 이송 → ④ 등록사항 서류 검토
→ ⑤ 현지확인 → ⑥ 기안·결재 → ⑦ 등록증 작성 → ⑧ 민원인 교부
- 기타참고사항

<p>첨부파일</p> <p style="border: 1px solid #000; border-radius: 15px; padding: 2px 10px; display: inline-block;">전체(Zip)다운로드</p>	<div style="display: flex; align-items: center;"> <div style="margin-right: 10px;"> 📎 </div> <div> <p>[별지 제28호서식] 비디오물제작(배급)업 변경신고서(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).hwp (1067 hit/ 18.5 KB) ↓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border: 1px solid #000; border-radius: 5px; padding: 2px 5px; display: inline-block;">미리보기</p> </div> </div>
---	--

COPYRIGHT ©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Yeosu Web Contents

